

공 고

서울지방우정청 공고 제2019-42호

2인 이하 근무관서 점심시간 휴무제도 시행 계획을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3월 6일
서울지방우정청장

2인 이하 근무관서 점심시간 휴무제도 시행에 따른 행정예고

1. 추진배경

2인 이하 근무관서 직원의 근무여건을 개선하고 취약시간대 사고예방 및 쾌적한 우정서비스 제공을 위함

2. 제도시행

가. 대상국 : 1국

총괄국명	대상우체국명	관서급	점심 휴무시간	비고
서울서초	서울가정행정법원	출장소	12:00 ~ 13:00	우편업무만 취급

나. 시행예정일 : '19. 4. 1(월)

3. 의견제출

동 추진사항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 2019년 3월 26일(화)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주 소 : (우03187)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6

서울지방우정청 우편영업과

○ 전 화 : 02-6967-9233, 팩스 0505-005-1102

○ 이메일 : yeji02@korea.kr

3. 기타사항

행정예고 사항에 대하여 더 자세한 사항을 알고 싶으신 분은 서울지방우정청
우편영업과(☎ 02-6967-923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